국가 언약

국가 언약; 곧 신앙고백:

1580년에 먼저 국왕 폐하와 그 왕실이 서명하였고; 그 후 1581년에 추밀원 경들의 명령과 총회의 법령들에 의하여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서명하였으며; 1590년에 총회의 요청으로 추밀원의 새 명령에 의하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시 서명하였으니: 참된 기독교 종교와 왕의 인격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 서약과 함께였고; 또한 뒤에 표명된 이유들로 인하여, 앞서 말한 신앙고백과 의회 법령들에 따라 참된 종교와 국왕 폐하를 유지하겠다는 결의와 약속과 더불어, 1638년에 남작들과 귀족들과 기사들과 자치도시민들과 사역자들과 평민들이 서명하였으며: 1638년과 1639년의 총회가 승인하였고; 1639년에 총회의 청원에 따른 추밀원의 명령과 총회의 법령에 의하여 모든 계층과 신분의 사람들이 다시 서명하였으며, 1640년 의회의 법령으로 비준되었고: 또한 찰스 2세 왕이 1650년 6월 23일 스페이에서, 그리고 1651년 1월 1일 스쿤에서 서명하였다.

I - 1581년의 신앙고백

우리 아래 서명한 모든 사람과 우리 각 사람은 공언하노니,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에 관한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양심을 오래 그리고 마땅히 살핀 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온전히 확정되었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손으로 서명하고, 하나님과 온 세상 앞에서 항구히 단언하노니,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참된 기독교 신앙과 종교이니, 이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복된 복음의 전파에 의하여 세상에 계시되었고; 많은 여러 저명한 교회들과 왕국들에 의하여, 그러나 주로 스코틀랜드 교회와 국왕 폐하와 이 왕국의 세 신분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요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수호되는 것이라; 이는 우리 신앙의 고백에 더욱 상세히 표명되어 있는바, 그 고백은 의회들의 여러 법령에 의하여 확립되고 공적으로 확증되었으며, 이제 오랫동안 국왕 폐하와 이 왕국의 온 몸에 의하여 도시에서나 시골에서나 공공연히 고백되어 왔느니라. 이 신앙고백과 종교의 형식에 우리는 모든 점에 있어서 양심으로 기꺼이 동의하노니,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위에 기초한 하나님의 의심할 수 없는 진리와 확실성에 동의함같이 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반된 종교와 교리를 혐오하고 가증히 여기되; 특히 모든 종류의 교황주의를 그 일반과 세부 조항에 있어서 가증히 여기노니, 이는 그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스코틀랜드 교회에 의하여 정죄되고 논박된 바와 같으니라.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과 교회와 국가 위정자와 사람들의 양심 위에 저 로마의 적그리스도가 찬탈한 권위를 가증히 여기고 거부하노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거슬러 선악에 무관한 일들에 관하여 만든 그의 모든 폭정적인 법들; 기록된 말씀의 충족성과 율법의 완전성과 그리스도의 직분과 그의 복된 복음을 거스르는 그의 그릇된 교리; 원죄와, 우리의 본성적 무능력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반역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칭의와, 율법에 대한 우리의 불완전한 성화와 순종과; 거룩한 성례의 본질과 수와 용도에 관한 그의 부패한 교리; 그의 다섯 가지 사생아 성례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참된 성례의 집

행에 덧붙여진 그의 모든 의식과 예식과 거짓 교리; 성례 없이 세상을 떠나는 유아들에 대한 그의 잔인한 판단; 세례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그의 주장; 화체설, 곧 그리스도의 몸이 요소들 안에 실제로 임재한다는 것과, 악인들 혹은 사람들의 몸이 그것을 받는다는 그의 신성모독적인 견해; 엄숙한 맹세들과 거짓 맹세들과 말씀에 금지된 혼인 촌수에 대한 그의 관면; 무죄한 이혼당한 자에 대한 그의 잔인함; 그의 마귀적인 미사; 그의 신성모독적인 사제직; 죽은 자와 산 자의 죄를 위한 그의 불경한 제사; 사람들에 대한 그의 시성; 천사들이나 세상을 떠난 성인들을 부르는 것, 형상들과 유물들과 십자가들을 숭배하는 것; 교회당들과 제단들과 날들을 봉헌하는 것; 피조물들에게 하는 서원; 그의 연옥,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거나 말하는 것과, 그의 행렬들과 신성모독적인 연도와, 그의 수많은 대언자 혹은 중보자들; 그의 가지각색의 수도회들, 귀에 대고 하는 고해; 그의 절망적이고 불확실한 회개; 그의 막연하고 의심스러운 믿음; 사람들이 자기 죄를 위하여 하는 그의 보속; 행위로 말미암는 그의 칭의, *opus operatum*, 여공(餘功)의 행위들, 공로들, 사면들, 순례들, 그리고 순회 참배들; 그의 성수, 종에 세례를 주는 것, 영들을 불러내는 것, 성호를 긋는 것, 축원의 표를 하는 것, 기름을 바르는 것, 주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들을 축성하는 것과 그에 결부된 미신적인 견해; 그의 세상적 군주제와 사악한 위계; 그의 세 가지 엄숙한 서원과, 여러 종류의 그의 모든 삭발한 자들; 트리엔트에서 만든 그의 그릇되고 피비린내 나는 교령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여 공모한 저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동맹의 모든 서명자 혹은 승인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혹은 그것을 거슬러, 그리고 이 참된 개혁교회의 교리를 거슬러 교회 안에 끌어들인 그의 모든 헛된 우의(寓意)와 의식과 표징과 전통을 가증히 여기노니; 이 교회에 우리는 교리와 신앙과 종교와 권징과 거룩한 성례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산 지체로서 기꺼이 연합하노라: 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이름으로 약속하고 맹세하노니, 우리는 이 교회의 교리와 권징에 순종하는 가운데 계속할 것이며, 우리의 소명과 능력에 따라 우리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이를 수호할 것이라; 법에 정한 형벌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날에 몸과 영혼이 함께 당할 위험 아래 그리하리라.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사탄과 저 로마의 적그리스도에게 선동되어, 자기 양심을 거슬러 거짓되이 약속하고 맹세하고 서명하며 한동안 교회에서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는 것을 보나니; 그들은 이로써, 먼저 종교라는 외적인 겉옷 아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종교를 은밀히 부패시키고 전복하며; 그 후에 때가 허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고안된 교황의 관면에 대한 헛된 소망 아래 그 종교의 공공연한 원수와 박해자가 되려 하나니, 이는 주 예수의 날에 그에게는 더 큰 수치가 되고 그들에게는 갑절의 정죄가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향한 위선과 그러한 두 마음의 처사에 대한 모든 혐의를 제거하고자 하여, 공언하며 모든 마음을 살피시는 이를 증인으로 부르노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이 우리의 신앙고백과 약속과 맹세와 서명에 온전히 일치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세상적 고려에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참된 종교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 양심에 확신하는 것이니, 모든 마음의 비밀이 드러날 그 날에 우리가 그에게 대답할 것같이 하노라.

그리고 우리 종교와 교회의 평온과 안정이, 그의 교회를 유지하고 우리 가운데 공의를 시행하도록 이 나라에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의 위로가 되는 도구로서의 국왕 폐하의 안전과 선한 처신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맹세와 서명과 형벌 아래 마음으로 공언하고 약속하노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 나라의 자유와 공의의 시행과 불의의 징벌을 수호함에 있어서,

이 왕국 안이나 밖의 모든 원수들에 맞서 우리의 재물과 몸과 생명으로 그의 인격과 권위를 수호할 것이니, 우리의 죽는 날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긍휼이 풍성한 수호자가 되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함같이 하노라; 그에게 성부와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Ⅱ - 의회의 법령들

마찬가지로 의회의 많은 법령들은, 참된 종교와 그 신봉자들에게, 혹은 참된 교회와 그 권징과 관할권과 자유에 해를 끼치도록, 혹은 우상숭배와 미신이나 교황주의 교회를 이롭게 하도록 만들어진 모든 법률, 제정법, 법령, 규정, 시민법 혹은 지방법의 법규들과, 그 밖의 모든 명령과 관행상의 형벌을, 그것이 무엇이든 일반적으로 폐지하고 무효화하고 취소하나니: 법령 3, 법령 31, 제1의회; 법령 23, 제11의회; 법령 114, 제12의회, 제임스 6세 왕과 같으니, 이는 교황주의와 미신이 완전히 억압되게 하려 함이요, 제임스 6세 왕, 제20의회 다섯째 법령에 반복된 의회 법령들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 그 법령들은 모든 교황주의자들과 사제들을 여러 가지 국가적 형벌과 교회적 형벌로 처벌하도록 명하나니, 이 왕국 안에서 전파되고 법으로 확립된 하나님의 참된 종교의 대적자들로서, 법령 24, 제11의회, 제임스 6세 왕; 모든 기독교 정부의 공동의 원수들로서, 법령 18, 제16의회, 제임스 6세 왕; 우리 주권자 군주의 권위에 대한 반역자들과 대항자들로서, 법령 47, 제3의회, 제임스 6세 왕; 그리고 우상숭배자들로서, 법령 104, 제7의회, 제임스 6세 왕이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특별히, 신앙고백에 더하여 그 이상으로, 교황의 권위와 관할권을 폐지하고 정죄하여 이 땅에서 추방하며, 그것을 유지하는 자들을 처벌하도록 명하고, 법령 2, 제1의회; 법령 51, 제3의회; 법령 106, 제7의회; 법령 114, 제12의회, 제임스 6세 왕: 교황의 그릇된 교리나, 이 왕국에서 공적으로 전파되고 법으로 확립된 참된 기독교 종교의 어느 조항에든지 상반되는 다른 모든 그릇된 교리를 정죄하며; 그러한 성격의 책이나 비방문, 혹은 편지나 문서를 퍼뜨리는 자들과 짓는 자들을 처벌하도록 명하고, 법령 46, 제3의회; 법령 106, 제7의회; 법령 24, 제11의회, 제임스 6세 왕: 교황의 교회를 따른 모든 세례와 미사의 우상숭배를 정죄하며; 미사를 드리는 모든 자와 고의로 그것을 듣는 자와 그것을 숨기는 자, 사제들과 예수회원들과 음모하는 교황주의자들을 유지하는 자와 숨겨 주는 자를 아무런 예외나 제한 없이 처벌하도록 명하고, 법령 5, 제1의회; 법령 120, 제12의회; 법령 164, 제13의회; 법령 193, 제14의회; 법령 1, 제19의회; 법령 5, 제20의회, 제임스 6세 왕: 현재 고백되는 종교를 거스르는 그릇된 교리를 담고 있거나, 백성이 크게 미혹되는 미신적인 교황주의 의식과 예식을 담고 있는 모든 그릇된 책과 문서를 정죄하며; 그것들을 왕국 안으로 들여오는 자들을 처벌하도록 명하고, 법령 25, 제11의회, 제임스 6세 왕: 지나간 우상숭배의 기념물과 찌꺼기들, 곧 십자가에 가는 것, 성인들의 축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다른 미신적이고 교황주의적인 의식들을 정죄하니, 이는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고 참된 종교를 멸시하게 하며 백성 가운데 큰 오류를 조장하는 것이라;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두 번째 범과에 우상숭배자로서 처벌하도록 명한다, 법령 104, 제7의회, 제임스 6세 왕.

마찬가지로 의회의 많은 법령들이 하나님의 참된 기독교 종교와 그 순결을,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교리와 성례에 있어서, 그 전국 총회와 대회와 노회와 당회에 있어서의 그 자유와 특권을, 그리고 그 정치와 권징과 관할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니; 이는 그 종교의 순결과 교회의 자유가

이 왕국에서의 종교 개혁에 따라 사용되고, 공언되고, 시행되고, 전파되고, 고백된 대로라: 예를 들면, 법령 99, 제7의회; 법령 23, 제11의회; 법령 114, 제12의회; 법령 160, 제13의회, 제임스 6세 왕과 같으니, 이는 찰스 왕의 법령 4에 의하여 비준되었다. 그러므로 제임스 6세 왕의 법령 6, 제1의회와 법령 68, 제6의회는 주후 1579년에 선언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일으키셨거나 이후로 일으키실 복된 복음의 사역자들로서 그 당시 살아 있던 이들과 교리와 성례의 집행에 있어서 일치하는 자들과; 그리스도께서 그때 복음 안에서 제시되신 대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신앙고백에 따라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는(이 왕국의 개혁 교회들에서 현재 집행되고 있던 대로) 백성이 이 왕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참되고 거룩한 교회라 한다. 또한 판결하고 선언하기를, 주후 1560년 의회에서 고백되고, 제임스 6세 왕의 첫 의회에서도 명시되었으며, 이 현재의 의회에서 비준된 신앙고백의 조항들이 더욱 상세히 표명하는 바대로 받아들여지고 승인된 복음의 말씀을 반대하거나; 그때 집행되던 대로의 거룩한 성례의 집행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과 각 사람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사회로부터 그렇게 갈라져 있는 동안에는, 이 왕국 안에 있는 위 교회와 현재 고백되는 참된 종교의 지체가 아니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의 법령 69, 제6의회, 제임스 6세 왕은, 그 당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왕국 안에 현재 확립되어 있던 것 외에 다른 교회의 모습이나 다른 종교의 모습이 없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참된 종교, 그리스도의 참된 종교, 참되고 기독교적인 종교, 그리고 완전한 종교라 일컬어진다”; 의회의 여러 법령에 의하여 이 왕국 안의 모든 사람은 그 종교를 고백하고, 그 조항들 곧 신앙고백에 서명하며, 위 조항들 중 어느 것에든지 상반되는 모든 교리와 오류를 철회할 의무가 있으니, 법령 4 및 9, 제1의회; 법령 45, 46, 47, 제3의회; 법령 71, 제6의회; 법령 106, 제7의회; 법령 24, 제11의회; 법령 123, 제12의회; 법령 194 및 197, 제14의회, 제임스 6세 왕이라. 그리고 한편으로, 모든 위정자와 주 장관 등은 모든 위반자들을 수색하고 체포하고 처벌하도록 명령받으니: 예를 들면, 법령 5, 제1의회; 법령 104, 제7의회; 법령 25, 제11의회, 제임스 6세 왕이라; 그리고 이는 국왕 폐하의 반대되는 어떠한 허가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니, 그 허가들은 교황주의자들과 참된 종교의 대적자들을 거스르는 의회 법령들의 집행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가 되고 방해가 되는 한에서는 취소되고 아무 효력이 없다고 선언되었다, 법령 106, 제7의회, 제임스 6세 왕. 다른 한편으로, 법령 47, 제3의회, 제임스 6세 왕에서 선언하고 명하기를, 하나님의 참된 종교의 대의와 전하의 권위가 이토록 결합되어 있어 하나의 손해가 둘 모두에 공통되므로, 자기의 신앙고백을 드리지 아니하고 위 참된 종교에 대한 공언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도 우리 주권자 군주나 그 권위에 대하여 충성되고 신실한 신민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권위에 대한 반역자와 대항자로서 처벌받을 것이며: 배교한 후에 다시 자기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은 앞으로 그 안에 계속할 것과, 우리 주권자 군주의 권위를 유지할 것과, 그들의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종교의 참된 설교자들과 신봉자들을 그 종교의 어떠한 원수들과 대항자들에게 맞서서라도 강화하고 돕고 유지할 것을 약속해야 하며; 특히 어느 나라, 신분, 지위에 속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자들과 참된 신봉자들을 거스르는 트리엔트 공의회의 잔인한 교령들을 추진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연합하였거나 스스로 결속하였거나, 도왔거나 돕는 모든 자들에게 맞서 그리해야 한다 하였으니; 이는 1572년 2월 23일의 퍼스 평화 협정 조항들에 한 자 한 자 반복되었고, 1573년 4월 말일에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며, 1578년 의회에서 비준되었고, 법령 123, 제12의회, 제임스 6세 왕에 언급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부가 조항이 덧붙었다: “그들은 참된 종교와 국왕 폐하와 참된 신봉자들을 거슬러 일으켜진 모든 반역적인 소요와 적대 행위에 저항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신민은 국왕 폐하의 왕적 인격과 권위를, 그리고 의회들의 권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니, 이것 없이는 어떤 법률도 합법적 법정도 세워질 수 없음이라, 법령 130 및 131, 제8의회, 제임스 6세 왕; 또한 신민들의 자유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니, 그들은 오직 왕의 법률들, 곧 이 왕국의 일반 법률들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것들만으로 살고 다스림을 받아야 함이라, 법령 48, 제3의회, 제임스 1세 왕; 법령 79, 제6의회, 제임스 4세 왕; 법령 131, 제8의회, 제임스 6세 왕에 반복됨; 만일 그것들이 변경되고 손상된다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두 왕국의 연합에 관한 위원회, 곧 제임스 6세 왕의 제17의회의 유일한 법령이 선언하는 바와 같이," 이 왕국이 더 이상 자유로운 군주국일 수 없을 만큼의 혼란이 뒤따를 것이니: 이는 이 왕국의 기본법들과 옛 특권들과 직분들과 자유들에 의하여, 폐하의 왕가 혈통의 군주적 권위가 이 여러 세대 동안 유지되어 왔을 뿐 아니라, 백성의 토지와 소득과 권리와 직분과 자유와 위엄에 대한 안전도 보존되어 왔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위 참된 종교와 이 왕국의 법률과 자유의 보존을 위하여, 법령 8, 제1의회에 의하여 제정되고, 법령 99, 제7의회에 반복되고, 법령 23, 제11의회와 법령 114, 제임스 6세 왕, 그리고 법령 4, 찰스 왕에서 비준된 바는 이러하다: "모든 왕과 군주는 그 대관식과 그 군주적 권위의 수령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엄숙한 맹세로 그들의 신실한 약속을 할 것이니, 그들의 생애 전 기간 동안 그 동일하신 영원한 하나님을, 그가 구약과 신약에 담긴 그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에서 요구하신 대로 그들의 힘을 다하여 섬길 것이요; 그 동일한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종교와, 그의 거룩한 말씀의 전파와, 이 왕국 안에서 지금 받아들여지고 전파되는 성례의 마땅하고 올바른 집행을(바로 앞에 있는 신앙고백에 따라) 유지할 것이며, 그에 상반되는 모든 거짓 종교를 폐지하고 대적할 것이요; 그들의 책임에 맡겨진 백성을, 앞서 말한 그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 뜻에 조금도 상반되지 아니하는, 이 왕국에서 받아들여진 칭찬할 만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스릴 것이요; 그들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온 기독교 백성에게 앞으로 모든 때에 참되고 완전한 평화를 얻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의하여 앞서 말한 범죄들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이단자들과 하나님의 참된 예배의 원수들을 그들의 통치 영역에서 뿌리 뽑기에 힘쓸 것이라." 이는 또한 폐하께서 1633년 에든버러에서의 대관식 때에 준수하셨으니, 대관식 순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전 시대 경건한 자들의 관행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존귀하고 경건한 선조들과 아직 우리 가운데 살아 있는 많은 이들의 칭찬할 만한 본을 따라 행한 것이니, 이는 또한 추밀원의 법령에 의하여 인가되었는데, 그 법령은 모든 계층의 폐하의 신민들이 일반 서약을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명하였으며,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하나는 그 당시 개혁되어 위에 기록된 신앙고백과, 그것이 관련되어 있고 합법적인 총회들과 의회들의 여러 법령으로 확립되어 공적인 교리문답들에 제시된 이전의 더 긴 신앙고백에 표명된 대로의 참된 종교를 수호하기 위함이었으니; 그 종교는 여러 해 동안 하늘로부터의 복과 함께 이 교회와 왕국에서, 오직 그의 기록된 말씀 위에 기초한 하나님의 의심할 수 없는 진리로서 전파되고 고백되어 왔다. 다른 이유는 국왕 폐하와 그 인격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으니; 하나님의 참된 예배와 왕의 권위가 이토록 긴밀히 결합되어 있어, 같은 친구들과 공동의 원수들을 가졌고, 함께 서고 함께 넘어졌기 때문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확신하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바, 이 땅의 현재와 후대의 세대들은 앞서 말한 국가적 맹세와 서명을 침해받지 않게 지킬 의무가 있다.

Ⅲ - 1638년의 언약

우리 아래 서명한 귀족들과 남작들과 기사들과 자치도시민들과 사역자들과 평민들은, 이전의 여러 때에, 그리고 특별히 이때에, 우리의 최근의 청원들과 불평들과 항의들에 일반적으로 담겨 있고 특별히 언급된 여러 가지 혁신들과 악들로 말미암아, 참된 개혁 종교와 왕의 명예와 왕국의 공공의 평화가 처한 위험을 고려하여; 이로써 공언하며,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과 세상 앞에서 엄숙히 선언하노니, 우리는 온 마음으로 동의하며, 우리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앞서 말한 참된 종교를 항구히 고수하고 수호하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미 도입된 모든 새로운 것들의 실행과, 교회의 공적 정치의 부패들이나 교직자들의 국가 직책과 권력에 대한 승인을, 그것들이 자유로운 총회들과 의회에서 심사되고 허용될 때까지 삼가면서) 모든 합법적인 방편으로 수고하여, 앞서 말한 새로운 것들 이전에 확립되고 고백되었던 대로의 복음의 순결과 자유를 회복하기로 결의하노라. 그리고 마땅한 검토 후에, 우리의 청원들과 불평들과 항의들에 담긴 혁신들과 악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없고, 앞서 말한 신앙고백들의 조항들과, 이 땅에서 종교를 개혁한 복된 개혁자들의 의도와 뜻과, 위에 기록된 의회 법령들에 상반되며, 교황주의 종교와 폭정을 재건하고, 참된 개혁 종교와 우리의 자유와 법률과 재산을 전복하고 파멸시키는 쪽으로 명백히 기울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선언하노니, 앞서 말한 신앙고백들은 앞서 말한 새로운 것들과 악들에 관하여, 마치 그것들 하나하나가 앞서 말한 신앙고백들 안에 표명되었던 것과 조금도 다름없이 해석되어야 하고 이해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 안에서 맹세로 버린 교황주의의 다른 세부 조항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가증히 여기고 혐오할 의무가 있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왕과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관한 지식과 양심에서, 어떠한 세상적 고려나 유인 없이, 인간의 연약함이 허락하는 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더 큰 분량을 소원하며;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이름으로 약속하고 맹세하노니, 앞서 말한 종교의 고백과 순종 가운데 계속할 것이며; 그것을 수호하고, 이 모든 상반된 오류들과 부패들에 저항할 것이니, 우리의 소명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두신 힘을 다하여, 우리 생애의 모든 날 동안 그리하리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노니, 우리는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거나 왕의 위대함과 권위를 감소시키는 데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일도 시도할 의도나 소원이 없노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약속하고 맹세하노니,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의 재산과 생명으로, 앞서 말한 참된 종교와 왕국의 자유와 법률을 수호하고 보존하는 가운데 우리의 경외하는 주권자 국왕 폐하와 그 인격과 권위를 수호하는 편에 설 것이며; 또한 참된 종교와 폐하의 권위를 유지하는 같은 대의 안에서, 우리의 최선의 조언과 우리의 몸과 재산과 온 힘으로, 누구든지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에 맞서서라도, 우리 각 사람이 서로를 상호 수호하고 돕는 편에 설 것이니; 그 대의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해지는 무엇이든지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여겨질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어떠한 암시나 결탁이나 유혹이나 위협으로도 이 복되고 충성된 결합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분열되거나 이탈되도록 허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동의 동의로 그처럼 선한 목적에 이바지한다고 판단될 어떠한 결의에 대해서도 그것을 멈추거나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장애나 방해도 던져 넣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반대로, 모든 합법적인 방편으로 그것을 진척시키고 촉진하기 위하여 수고할 것이라: 그리고 만일 그러한 위험하고 분열적인 제안이 말로나 글로 우리에게 제기된다면, 우리와 우리 각 사람은 그것을 억누르거나, 필요하다면 즉시 그것을 알려서 때에 맞게 막을 수 있게 할 것이라. 또한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이 그들의 간교와 악의로 우리에게 씌우려 하

는 반역이나 결탁이나 그 밖의 무엇이든 그 추악한 비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행하는 바는 이토록 정당한 근거가 있고,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의 공동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참된 예배와 우리 왕의 위엄과 왕국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거짓 없는 소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우리의 고백과 서명에, 하나님과 그들의 언약을 갱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그러한 삶과 행실을 결합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일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를 따르는 자들과 우리 아래 있는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하여, 공적으로나 우리의 개별 가정에서나 개인적인 처신에 있어서나,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경계 안에 우리 자신을 지키고, 모든 경건과 절제와 의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행할 모든 의무에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본이 되기를 힘쓸 것을 신실하게 약속하노라.

그리고 이 우리의 연합과 결합이 침해 없이 지켜지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노니, 그는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소원이요 거짓 없는 결의임을 아시나니, 우리가 그 큰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답할 것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형벌과, 이 세상에서의 오명과 모든 명예와 존경의 상실의 형벌 아래 그리하노라: 이 목적을 위하여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과 일을 행복한 성공으로 복 주시기를 주께 지극히 겸손히 간구하노니; 이 땅에 종교와 의가 번성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왕의 명예와 우리 모두의 평화와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에 대한 증거로, 우리는 앞에 기록된 모든 것에 우리 손으로 서명하였노라.

Ⅳ - 1639년의 선언

처음 서명할 때 총회의 결정에 맡겨졌던 이 언약의 조항이 이제 결정되었고; 이로써 퍼스의 다섯 조항과, 주교들에 의한 교회 정치와, 교직자들의 국가 직책과 권력이, 총회 법령들에 담긴 이유들과 근거들에 따라 이 교회 안에서 불법이라고 선언되었으므로, 우리는 앞서 말한 결정에 따라 서명하노라.

© 2026 Westminster 1647 :: https://westminster1647.com/ko/correo